

의안번호	2216874
의 퇴 인	안도걸 의원
회 답 일	2026. 4. 10.
추계번호	25A7050
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의2 (부설기관)	한국에너지공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8조의2 (에너지영재학교의 설치·운영)	- 한국에너지공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에너지 분야 과학 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(이하 “에너지영재학교”라 한다)를 둘 수 있음(제1항) - 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두는 에너지영재학교는 「영재교육 진흥법」에 따른 영재학교로 봄(제2항) -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사·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영재교육 진흥법」을 따르고 「초·중등교육법」을 적용하지 아니함(제3항) - 총장은 에너지영재학교를 지휘·감독함(제4항)	재량규정
3	안 제18조의2 (에너지영재학교의 교직원)	- 에너지영재학교에 교직원으로서 교장·교감 및 교사를 두고,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음(제1항) - 에너지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·수당·배치기준·계약기간·근무조건·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함(제2항) - 에너지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음(제3항) - 총장은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음. 이 경우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함(제4항)	재량규정
4	안 제21조 (교원인사위원회와 에너지영재학교 교 원인사위원회)	-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교원인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에너지영재학교에는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(제1항) -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·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,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·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3조의2 (부설기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8조의2 (에너지영재학교의 설치·운영)	
3	안 제18조의2 (에너지영재학교의 교직원)	
4	안 제21조 (교원인사위원회와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)	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에너지영재학교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, 에너지영재학교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건축비와 교직원 인건비, 경상경비, 학사사업비 등 운영비가 수반될 수 있음

- 현재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하게 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두고 있는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(KAIST)이 있으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「영재교육 진흥법」 제14조에 따라 해당 학교(한국과학영재학교)의 운영을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인건비, 경상경비, 건축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¹⁾²⁾

1)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「영재교육 진흥법」에 따른 영재학교로 간주되므로, 「영재교육 진흥법」에 따른 재정 지원 규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운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

2) 「영재교육 진흥법」 제14조(재정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, 운영비, 실험실습비,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·입학금,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개정안에 따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에너지영재학교를 두는 경우에도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동일하게 「영재교육 진흥법」 상 재정지원 규정을 근거로 국가에서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³⁾

□ 에너지영재학교 설치·운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입학정원, 교직원 채용 인원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데, 현재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으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
- 개정안은 에너지영재학교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국에너지공대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부지, 시설의 규모와 건립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
- 또한, 교원의 보수·수당·배치기준·계약기간·근무조건 등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채용 규모나 보수 단가에 따른 인건비·기본경비 등을 추계하기 곤란함
- 참고로,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으로 학교 운영을 위한 인건비, 기본경비,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, 노후 정보시스템 재구축비, 노후 교육시설 보수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, 예산 규모는 2026년도 기준 216억 7,400만원임

[표 1]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지원 사업 현황

세부사업 (회계, 코드)	주요내용	예산(백만원)	
		2025	2026
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지원(R&D)(일반회계 , 2231-417)	(기관운영비-인건비/경상비)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 운영 기본 경비 (기관고유사업비-학사사업비) 기관 설립 목적에 의거 수·과학 분야 우수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 및 연구·탐구 중심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과학영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	18,394	19,172
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시설 지원(일반회계, 2231-435)	(시설비-노후시설보수) 건축 26년 이상 경과로 노후화된 교육시설의 보수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 및 교육·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	2,502	2,502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3) 현행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의3과 동일하게 개정안에서도 에너지영재학교를 「영재교육 진흥법」에 따른 영재학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(안 제8조의2제2항), 해당 법률에 따른 재정 지원 규정을 근거로 국가가 설치·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

- ☐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☐ 없음

Ⅳ. 작성자

- 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박선아	김신애

- 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652	sunapark@nabo.go.kr

[참고자료] 한국과학영재학교 기본 현황

○ 설립목적

-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재능이 뛰어난 영재 조기 발굴 및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체계적 교육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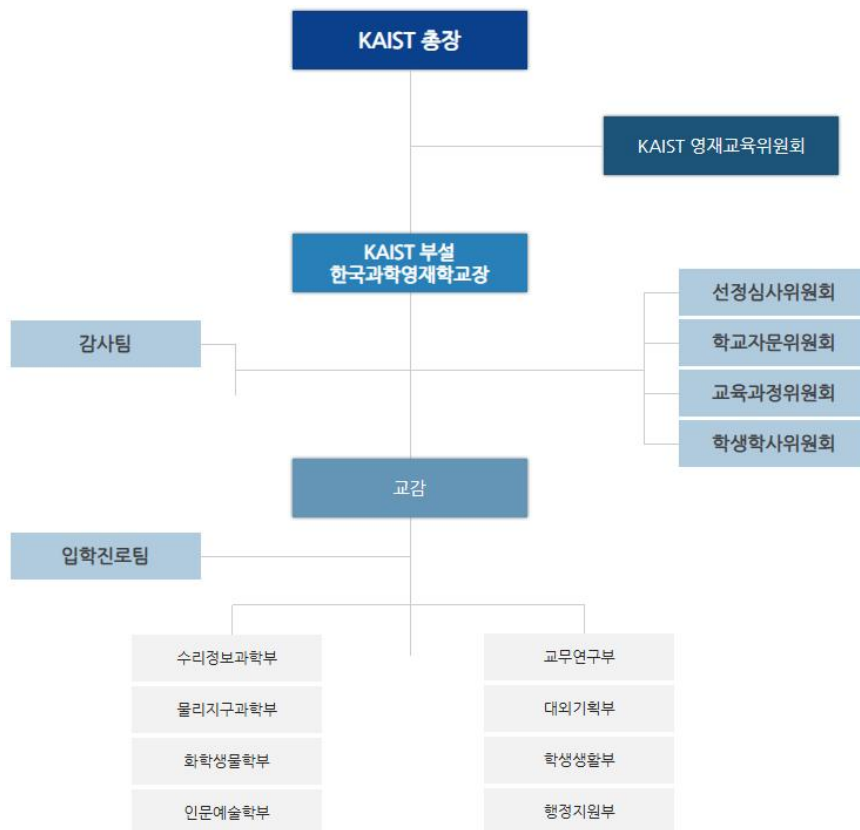
※ (설립근거)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,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

○ 주요연혁

- 1990.09. : 부산과학고등학교 설립
- 2003.03. : 과학영재학교 전환(국내 최초)
- 2005.07. : 교명 변경(부산과학고 → 한국과학영재학교)
- 2009.02. : 한국과학기술원(KAIST) 부설 전환

○ 조직 및 인원

- 조직 현황



－ 학생 현황

(2026.3월 기준 / 단위 : 명)

구분		1학년	2학년	3학년	합계
학생수	남	106	108	94	308
	여	25	22	28	75
	계	131	130	122	383
학급수		12	12	12	36

※ 외국인학생 23명 포함

－ 교직원 현황

(2026.3월 기준 / 단위 : 명)

교원						직원				합계
교장	교감	전임교원	교육청교원	외국인/기간제	소계	행정/사무	기술/기능	조교	소계	
1	1	51	5	7	65	40	16	6	62	127

※수·과학 교과 전임교원 100% 박사학위 소지

○ 시설 현황

(2026.3월 기준)

구분	면적	용도	위치
1. 부지	59,180㎡ (17,902평)		부산광역시 부산진구
가. 교지	53,852㎡ (16,290평)		
나. 운동장	5,328㎡ (1,612평)		
2. 건물	36,636㎡ (11,082평)		
가. 본관동	15,461㎡ (4,677평)	교육시설	
나. 창조관	5,460㎡ (1,652평)	교육시설	
다. 예지관	4,304㎡ (1,302평)	교육시설	
라. 기숙사	8,859㎡ (2,680평)	학생기숙사	
마. 백양관	1,284㎡ (388평)	게스트하우스	
바. 드림디자인센터	985㎡ (298평)	교육시설	
사. 기타부속물	283㎡ (85평)	수위실, 창고 등	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